

#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파리지사)

##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주요 변경사항

유럽연합, 2023년 6월 29일부터 산림 벌채로 생산되는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산림 전용 방지 규정 시행

- 유럽의회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산림 벌채와 이로 인한 산림 황폐화 현상을 제재하기 위해 《산림전용(轉用) 규제 법안》을 제정함.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벌채로 생산된 제품(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등 7개 품목 관련 제품)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판매와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정한 것으로, 해당 품목 및 관련 제품을 유럽연합 내에서 수입, 유통하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이 산림 벌채와 무관하고, 생산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실사 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함
- 해당 법안 제8조에 따라 실사 의무 사항에는 필요 정보 및 문서의 수집(제9조), 위험 평가 조치(제10조)와 위험 완화 조치(제11조)가 포함됨. 유럽연합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림 전용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별 위험도를 저위험(1%), 표준 위험(3%), 고위험(9%)으로 분류하고, 저위험 국가의 산림 벌채 규제 대상 품목에는 수입 시 간소화된 실사 절차를 적용할 계획임(2024년 12월 30일까지는 모든 국가를 표준 위험 국가로 적용, 이후에는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임)

규제 법안 적용 대상 제품 필요 정보 품목(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명 및 상품설명서, 원재료 목록</li> <li>- 상품 수량(품목의 부피, 개수, 중량 등 품목에 따라 다름)</li> <li>- 생산 국가 및 생산 관련 국가</li> <li>- 생산 지역 및 생산 날짜</li> <li>-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을 공급받은 기업 또는 개인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li> <li>-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을 공급받은 사업체 또는 운영자, 거래자의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li> <li>- 규제 적용 대상 상품이 산림 벌채와 관련이 없다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li> <li>-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상품이 생산되었다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li> </ul>
	정보on-free-products_en

EU 산림전용 규제 대상 품목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고기(신선, 냉장 · 냉동)</li> <li>- 배합물의 쇠고기 함유량이 100분의 20 초과인 가공식품 (장조림 등)</li> </ul> <p>[관련 HS code] 0102.21, 0102.29, 0206.10, 0206.22, 0206.29, 1602.50, 4101, 4104, 4107</p>
코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코아</li> <li>- 코코아 껍데기</li> <li>- 코코아 버터</li> <li>- 코코아 가루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li> <li>- 코코아 가공식품 등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li> </ul> <p>[관련 HS code]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p>
커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피</li> <li>-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li> <li>- 커피 함유 커피 대용물(커피 포함 비율 상관없음)</li> </ul> <p>[관련 HS Code] 0901</p>
팜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팜너트</li> <li>- 팜유</li> <li>- 조유</li> </ul> <p>[관련 HS Code] 1207.10, 1511, 1513.21, 1513.29, 2306.60, 2905.45, 2915.70, 2915.90, 3823.11, 3823.12, 3823.19, 3823.70</p>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두</li> <li>- 대두 가루</li> <li>- 대두유(껍데기 포함)</li> </ul> <p>[관련 HS Code] 1201, 1208.10, 1507, 2304</p>

\* 출처: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forests/deforestation/regulation-deforestation-free-products\\_en](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forests/deforestation/regulation-deforestation-free-products_en)

## 2. 시사점

- 산림전용 규제 법안은 2023년 6월 28일부터 발효되지만, 사업자의 실사 의무 사항과 유럽연합의 감독 의무 사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됨. 산림전용 수준에 따른 국가별 위험도 분류와 실사 보고서 제출 시스템 구축 또한 2024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따라서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등 관련 제품을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법안의 적용 대상 및 실사 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입업체와 논의하여 2024년 12월 30일까지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실사 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II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1. 통관동향 등 이슈

유럽연합, 2023년 7월부터 한국의 즉석 면류 제품 수입시 에틸렌옥사이드 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 2023년 6월 유럽연합이 발표한 (EU)2023/1110에 한국산 즉석 면류 제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하는 수입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됨
- 2021년 8월, 독일로 수출된 한국산 라면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바 있음. 이에 유럽연합은 (EU)2021/2246을 발표하고, 한국의 즉석 면류 제품과 식이보충제 제품을 유럽연합 내로 수입 시 수입 건당 20%(수입 물량의 20%)의 검사 비율을 적용하고,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을 준수하는 공식 검사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2년 6월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사항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왔음. 그리고 2023년 6월 한국에서 수입된 즉석 면류 제품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관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과 즉석 면류 제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데 최종 합의함.

## 2. 변동사항

- 한국에서 수입되는 향신료/시즈닝/소스를 함유한 즉석 면류 관련 조치 사항을 (EU)2019/1793의 부록 2 「미생물 및 잔류물 오염 위험이 있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부록 1 「공식 통제를 일시적으로 강화하는 제3국의 식품 및 사료」 목록에 추가함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즉석 면류 제품 수출 시 EU 규정 상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을 준수한다는 증명서(시험성적서 및 검사성적서,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증명서) 제출 요건이 삭제됨.

\* 관련 수입 검사율은 20% 유지

\*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FR/TXT/?uri=CELEX%3A32023R1110>

## 3. 기타 주의사항 등

- 이번 수입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유럽연합 국가로 라면 등의 즉석 면류 제품 수출 시 통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성분 증명서 준비로 부담을 느꼈던 한국 식품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이 줄어들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산 즉석 면류의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위험에 대한 유럽연합의 감독 조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에틸렌옥사이드 관련 수입 검사율은 20%로 유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따라서 유럽연합 국가로 즉석 면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검출 기준에 유의하여 수출 제품을 준비하고, 수입 통관 진행 시 성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제품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함

### III

##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1. 통관거부사례 - 기준월(6월) 보고된 사례 없음

- 참고번호 2023.3993 : 한국수출 김스낵, 요오드 과다 함량으로 슬로베니아 국경 검역소에서 후속조치를 위한 정보 고지 조치.
- 참고번호 2023.4183 : 한국산 건조미역, 요오드 과다 함량으로 독일 국경 검역소에서 경고 조치.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 시사점

- 특이사항 없음.